

## 재외선거 준비상황

재외선거와 관련한 현지 여론이나 문제점 및 개선의견을 '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 홈페이지(<http://bk.nec.go.kr>)'의 '참여마당/인적네트워크 커뮤니티'에 올려 주시거나 이메일([paix@korea.kr](mailto:paix@korea.kr))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 귀하의 고견을 재외선거 정책개발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.

※ 재외선거 퀴즈(10월)를 첨부하니, 재외선거 관련 의견과 함께 퀴즈 정답을 위의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 반기별로 참여도 등을 평가하여 소정의 사례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.

※ 지난 안내자료는 재외선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

**중앙선거관리위원회**

(재외선거정책과)

# 재외선거 준비상황

## 1 전 세계 158개 공관에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설치·운영

- 2011. 10. 14. 전 세계 158개 공관에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됨에 따라 헌정사상 처음 실시되는 재외선거의 역사적인 막이 올랐습니다. 2013. 1. 18.까지 운영되는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 및 제18대 대통령선거의 재외선거를 관리합니다.
- 대부분의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최초 위원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·부위원장을 호선하고, 간사·서기를 위촉하였으며, 호선 결과 등을 홈페이지 및 공관 게시판 등에 공고하였습니다.



-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선거관리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재외선거 관리 전반, 투표용지 작성·교부 기계장치 운영 및 선거범죄 예방·단속 등에 관한 업무처리능력을 더욱 높이기 위하여 재외선거관리위원회 구성·운영지침, 교육교재 및 동영상 등을 시달하고, 재외선거관리위원회 Q&A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으며, 2011. 11. 7. ~ 8.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.

- 2012. 4. 11.(수) 제19대 국회의원선거의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및 국외부재자 신고기간 시작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. 선거일 전 150일부터 선거일 전 60일까지이므로 **2011. 11. 13.(일) ~ 2012. 2. 11.(토)** 신고 또는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.
-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· 국외부재자 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.

	재외선거인 등록신청	국외부재자 신고
누가?	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, 국내거소신고도 하지 않은 19세 이상 재외국민	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국내거소신고를 한 19세 이상 국민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
언제?	2011. 11. 13. ~ 2012. 2. 11.	
어떻게?	<p>공관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 (공관에 비치된 서식 또는 재외선거 홈페이지에서 출력한 서식에 작성)</li> <li>▪ 여권 사본</li> <li>▪ 재외투표관리관이 공고(재외공관 홈페이지 등)한 서류 사본(비자·영주권증명서·장기체류증·외국인등록증 등)</li> </ul> <p>※ 여권 원본 및 재외투표관리관이 공고한 서류 원본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신청 접수</p>	<p>방문, 인편 또는 우편신고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국외부재자 신고서 (공관에 비치된 서식 또는 재외선거 홈페이지에서 출력한 서식에 작성)</li> <li>▪ 여권 사본</li> </ul>
누구에게?	재외투표관리관(공관장 등)에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국내거주자는 관할(주민등록지 또는 국내거소신고지)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</li> <li>▪ 외국체류·거주자는 재외투표관리관(공관장 등)에게</li> </ul>

- 신고·신청서 안내문 및 작성요령은 재외선거 홈페이지(팝업존 또는 재외선거 자료집 - 서식자료)에서 9개 국어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## 3

## 재외선거 절차사무 본격 시작

-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재외선거 주요사무가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중심으로 2012년 양대 재외선거 관리체제 가동에 돌입 하였습니다.
- 첫째, 제19대 국회의원 재외선거상황실을 설치하여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. 전 세계 재외선거상황의 실시간 대응·지원을 위해 상시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함으로써 재외선거 사무일정별 공관의 재외선거 준비·진행상황을 파악하고, 국외의 재외선거관리 사건·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.



- 둘째, 재외선거의 물적 기반이 되는 재외공관 신고·신청 운영환경 (시설·장비 등)을 최종 점검하여 재외선거의 안정적 관리를 꾀하였습니다.
- 셋째, 재외선거 관계기관에 소관분야별 협조사항을 통지하여 범국가적 재외선거관리체제의 구축을 위한 적극적 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.
- 넷째, 공항리무진 버스를 이용하여 신고·신청기간을 안내(10월 중순부터 공항리무진 16개 노선, 총 50대)하는 등 앞으로도 시기별 집중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.

## 4

## 재외선거 관련 인터뷰 및 강연

-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훈교 재외선거기획관은 세계한인의 날에 즈음하여 KBS 월드라디오 <한민족 네트워크>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모의 재외선거 실시를 통한 개선사항, 재외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, 주요 재외선거사무일정 등을 소개하였으며, 코리아헤럴드와의 인터뷰(2011. 10. 18. 기사 : 'Voting an innate right granted to all citizens')에서는 재외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장치, 재외국민 선거권의 제한 및 확대 등에 관한 그간의 법적 논의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입장을 밝히고 많은 재외국민이 보다 쉽게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습니다.
- 2011. 10. 11.(화) ~ 10. 14.(금)에 개최된 제7회 세계한인언론인워크숍에서는 재외동포언론인 등을 대상으로 '재외선거와 현지언론의 역할'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였습니다. 이번 강연에서는 특히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설치·운영, 재외선거인 등록신청·국외부재자 신고 등 본격적인 재외선거사무 실시에 맞추어 재외국민의 여론 형성을 주도하는 국외언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.



- 2012. 4. 11. 실시하는 제19대 국회의원 재외선거를 관리함에 있어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위원·간사, 재외투표관리관, 재외선거관,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추진할 주요 사무의 처리지침을 정하여 재외공관 등을 통해 시행하였습니다.
- 지침에 의한 통일적인 업무처리를 하되, 현지 실정에 맞게 세부계획을 수립·시행하고, 시기별로 추진하여야 할 업무를 철저히 확인·점검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.
- 관리지침은 크게 재외선거 관리방향, 재외선거 관리, 재외 공명선거 홍보 및 예방·단속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, 재외선거의 중요성, 중점 관리 대책에서부터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운영, 절차사무 관리, 재외선거인명부 등 작성, 재외투표, 재외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·단속, 참여율 제고 등의 내용을 통해 정확하고 신중한 선거사무 수행과 공정성·중립성을 견지해야 하는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.

재외국민 투표참여 캠페인

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기간

중앙선거관리위원회

## 투표

하는 곳은 달라도 꿈꾸는 대한민국은 같습니다

「2012. 4. 11. 제19대 국회의원선거」  
**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**  
**(2011. 11. 13. ~ 2012. 2. 11.)**

민간선 검사장비 재외선거
재외선거 홈페이지 <http://ok.nec.go.kr>

## 재외선거 퀴즈 (9월) 정답

\* 9월 재외선거 퀴즈 정답 ⇨ 3번(㉠, ㉡, ㉢)

㉠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설치·운영하는 것이 원칙이나, 기존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운영기간 중 또는 운영기간 만료 후 6개월 이내에 다른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설치·운영기간이 시작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설치·운영하지 않고, 연이어 운영하게 됩니다.

☞ 「공직선거법」 제218조(재외선거관리위원회 설치·운영) 제9항

㉡ 공정하고 중립적인 재외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국회의원 선거권이 없는 사람, 정당의 당원인 사람, 재외투표관리관은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

☞ 「공직선거법」 제218조(재외선거관리위원회 설치·운영) 제3항

㉢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투표 관리 시 3명 이상의 위원을 지정하게 관리하게 할 수 있으며, 이 때 정당추천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책임위원 1명을 지명하여야 합니다.

☞ 「공직선거법」 제218조의17(재외투표소의 설치·운영) 제5항

㉣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투표소의 명칭·소재지, 운영기간 등을 선거일 전 20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하는데, 이 때 투표사무원의 성명을 함께 공고함으로써 보다 책임 있는 선거관리를 도모하는 것입니다.

☞ 「공직선거법」 제218조의17(재외투표소의 설치·운영) 제3항 및 제4항

## 재외선거 퀴즈 (10월)

● **문 제 1** 다음 빈 칸에 들어갈 적당한 말로 짝지어진 것은?

영주권자 중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이 외국에서 투표하고자 할 때에는 (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)를 하여야 하며, 이 경우 우편신고를 할 수 (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).

- ① 재외선거인 등록신청, 있다
- ② 국외부재자 신고, 있다
- ③ 재외선거인 등록신청, 없다
- ④ 국외부재자 신고, 없다

● **문 제 2** 다음을 읽고 빈 칸에 O, X를 넣으시오.

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할 때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여권 사본 및 재외투표관리관이 공고한 서류 사본을 제출하므로 여권 원본 및 재외투표관리관이 공고한 서류의 원본은 함께 제시하지 않더라도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접수가 된다. (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)

거주 국가	재외선거 관련 의견(지역 선거정황 포함)
성 명	